

장애인선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장애인스포츠인들과
함께하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가 있습니다.



vancouver 2010



장애인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권!**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선/수/인/권/보/호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ENTS

I 선수 폭력의 예방과 대처 / 05

- 1. 선수 폭력이란? / 05
- 2. 상황별 선수 폭력 예방법 / 06
- 3. 선수 폭력 대처방법 / 10

II 선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11

- 1. 선수 성폭력이란? / 11
- 2. 상황별 선수 성폭력 예방법 / 12
- 3. 선수 성폭력 대처방법 / 14

III 참고 자료 / 15

- 1. 선수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 15
- 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훈련권익보호센터 소개 / 17
- 3. 관련 법규 / 18



I 선수 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선수 폭력이란?

선수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선수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선수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도 선수폭력에 해당된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폭력과 선수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크게 구분된다.



2. 상황별 선수 폭력 예방법

● 경기장 및 훈련장

-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 운동부 규율을 잡거나 훈련의 목적으로 하는 체벌이나 기합 또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 선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과도한 훈련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 지도자는 훈련이나 시합과정에서 선수의 장애 특성을 숙지하고 사전에 선수에게 훈련 및 시합의 목표와 방법,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지도자는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지도방법을 통하여 개인과 팀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수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특성에 대한 비하 발언 및 운동기능이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놀리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선수에게 협박, 위협, 공포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잠시 떠나 격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 선수의 수업 복귀 시간,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연습이나 경기가 끝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시간을 늦추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선수에게 훈련과 상관없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된다.



- 운동부실, 운동장비 보관실, 라커룸 등에 몽둥이, 파이프 등 폭력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비치하지 않는다.
- 지도자는 선수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선수 간, 폭력 및 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 훈련장, 운동부실, 운동장비 보관실, 라커룸, 기타 장소를 지도자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 지도자가 특정선수를 편애하면 안 되며, 훈련 시 모든 선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해야 한다.
- 차량 이동 시 지도자는 선수와 함께 차량에 동승하도록 한다.
 - ▶ 차량 이동 시 선수 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개인 운동도구 및 물품은 각자 가지고 이동하고, 단체 운동도구 및 물품은 선후배 선수가 조별로 그룹을 만들어 공동으로 들고 이동한다.
- 연습 및 경기의 시작 전 준비와 끝난 후 정리는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를 3~4명씩 그룹을 만들어 책임지도록 한다.
- 선수폭력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묵인, 간과, 회피해서는 안된다.
- 지도자는 선수의 장애 특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훈련과 시합 중에 장애와 관련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한다.
- 지도자의 훈계, 감정표현의 결과에 따라서 선수 간 폭력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시합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자는 패배의 원인을 개인이나 팀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모색한다.

● 합숙 등 일상생활

- 공동생활에서 지도자와 선수가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선수들과 합의하여 만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선수들에게 폭행, 폭언 등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휴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를 동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개별선수 및 운동부 전체와 정기적인 대화 및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반기별로 1회 이상 대면 또는 설문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폭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 전체적인 교육 및 예방교육,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선수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에 선수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폭력 예방 교육에 부득이하게 선수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자 주관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일자와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 ▶ 폭력 예방 교육은 폭력 예방법, 발생 시 대처법, 신고처, 상호 이해와 존중의식 등을 포함한다.



- 평소 범죄가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선수들이 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 폭력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합숙 시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이 있는 선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선수의 잠버튼, 식사습관,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방법 등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행동이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같은 방이나 공간을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 선수들이 장애로 인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다른 선수들이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선수들이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신경이 예민해져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폭력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수와 그 보호자, 야간 응급환자 수용가능 병원 등 비상 연락처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지도자의 연락처(전화, 이메일)를 반드시 선수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합숙 시에는 선수들에게 반드시 비상구와 탈출요령을 알려줘야 한다.

3 선수 폭력 대처방법



- 폭력 발생 시 피해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보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탈골, 골절, 기도 막힘 등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119나 전문병원 등에 연락한다.
- 폭력사고 발생 시 사건 정황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구체적 진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 폭력사건에 연루된 선수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상황의 문제 및 심각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피해선수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 폭력행위 발생으로 파손된 기물 등은 촬영해 두어야 한다.
 - ▶ 가해자 처벌수위 고려 및 변상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 지도자 본인이 선수에게 폭력을 행하였을 경우 피해선수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II

선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선수 성폭력이란?

선수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행위로, 성매개로 선수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선수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과 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간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유사간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성희롱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



2 상황별 선수 성폭력 예방법

● 경기장 및 훈련장

- 지도자는 훈련 시 선수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탈의시킨 상태로 훈련 또는 기압을 주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훈련 중 마사지 등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선수에게 동의를 구한다.
 - ▶ 일방적인 신체접촉이나 지시행위는 선수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도자는 훈련 시 친밀감의 표현으로 선수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 ▶ 본인은 친밀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도자는 기술지도 시 신체를 접촉해야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지도자는 선수를 격려하고자 할 때는 선수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 보다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편이 좋다.
- 지도자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선수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말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된다.
- 지도자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훈련 중에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등)를 지속적으로 응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대회(전지훈련) 시 가능한 한 선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모든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 특정 선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 다른 선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은 성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지도자는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성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훈련 스케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지도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훈련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합숙 등 일상생활

- 지도자는 평상시 친밀감의 표현 또는 습관적으로 선수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 ▶ 본인은 친밀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도자는 선수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어깨 주무르기, 팔 베개 등 신체일부를 선수에게 만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선수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면 안 된다.
 - ▶ 예를 들어 블루스, 러브 샷, 뽀뽀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평상 시 선수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지도자는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등)를 지속적으로 응시 하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음란물(사진, 동영상 등)을 선수에게 보여주거나 같이 보자고 강요 해서는 안 된다.
- 선수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서는 안 된다.
- 지도자는 공적 업무 외에는 선수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선수 방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지도자는 선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공간(상담실 등)을 활용한다.
- 지도자는 운동 이외의 시간에는 가능한 한 선수와 1대 1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 ▶ 1대 1 만남은 다른 선수들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도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지도자는 선수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지도자는 선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지도자는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지도자는 선수 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선수들의 심리상태와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지도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훈련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선수 성폭력 대처방법



-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하는 중에 실수로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수에게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를 한다.
-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지도자는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 경찰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 지도자는 피해선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성폭력 피해자 선수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킨다.
- 지도자는 피해 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지도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지도자는 성폭력 발생 시 대처법을 인식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 (신고의무) 2013. 3. 23 개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 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III 참고 자료



1 선수 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1) 선수 폭력 발생 시

● 지도자나, 성인선수 간에 의한 폭력처리 절차



사건발생



사건발생 알림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 소속기관 및 수사기관



치료 및 증거 확보

- 의료기관 방문치료
- 당시 상황 기록, 진단서 등의 증거 확보
- 구타인 경우, 신고와 병행



사건조사 및 처리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 소속기관



치유 및 회복

-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2) 선수 성폭력 발생 시

장 애인 성폭력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욕하거나, 협박하거나, 꼬드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장애인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과 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모두 포함한다.

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소개

●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현황

- 설립목적** ○ 장애인 선수의 권익보호 및 폭력(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법률자문, 관련 정보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연혁** ○ 2013. 5. 20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개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 2013. 7. 1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홈페이지 오픈 (sports-in.kosad.or.kr)
- 운영인력** ○ 전문상담사 배치(2인)

● 이용대상 및 방법

- 이용대상** ○ 선수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단체
○ 선수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단체
○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가이던스, 스포츠타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단체
※ 신고/상담 비밀 절대 보장
- 이용방법** ○ sports-in.kosad.or.kr(대한장애인체육회스포츠타인권익센터) 접속
○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상담실 전화연락 : 1599-6119
○ 장애인스포츠타인권익보호센터 상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소재
2014년 송파구 소재 별도건물로 이전 예정
※ 신고/상담자 비밀 절대 보장



3 관련 법규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대상 성범죄자 법적인 처벌

법률적용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장애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비친 고죄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청소년 추행/ 장애아동, 청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적용 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 장애가 있는 사람, 강간	무기/7년 이상	공소 시효 적용 배제
		2항 장애가 있는 사람, 유사강간	5년 이상	
		3항 장애가 있는 사람, 강제추행	3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친 고죄
		4항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사람, 간음하거나 추행	1-3항 동일	
		5항 위계, 위력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5년 이상	
		6항 위계, 위력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 추행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7항 장애인시설 종사자 보호, 감독 대상 장애인	1-6항 정한 형의 2분의 1가중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전화상담 1599-6119

인터넷상담 sports-in.kosad.or.kr



장애인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권!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 상담 / 교육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신체의 자유 / 안전을 누릴 권리 / 표현의 자유)

➔ 행복추구권

장애인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권,
당신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혹시 장애인선수들, 인권침해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선수 성폭력 / 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교육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인의 행복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http://sports-in.kosad.or.kr>



장애인선수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1층(방이동)

상담전화 1599-6119

FAX 070-7469-6119

온라인상담 sports-in.kosad.or.kr